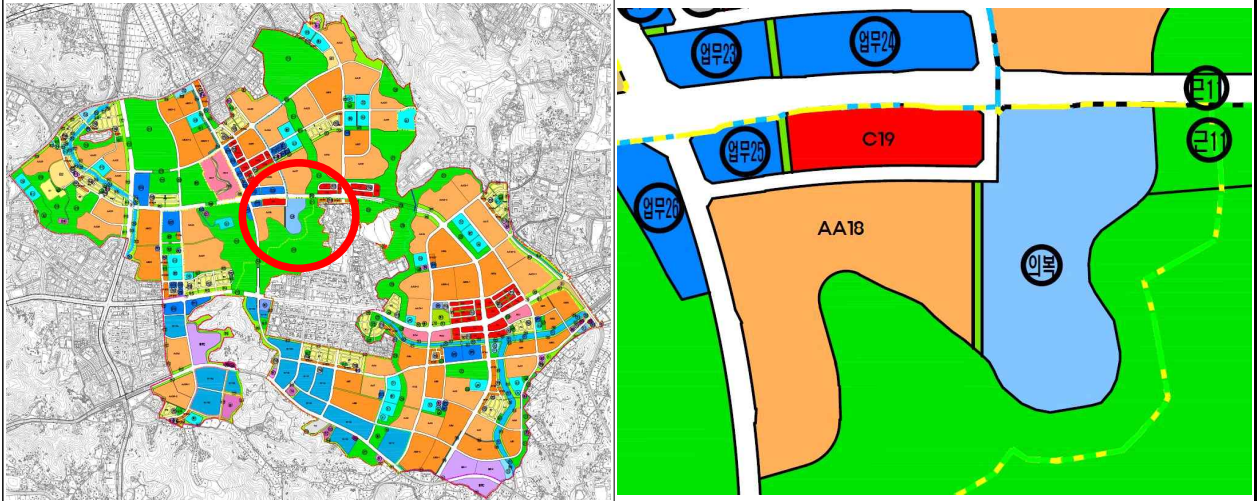


공급대상 토지현황

□ 공급대상용지(의복1) 위치도



□ 공급대상토지

구분	블록명	면적(㎡)
	의료 복합 시설 용지 의복1	47,328

□ 공급대상용지 지구단위계획 등

< 용도지역 및 건축물 밀도계획 >

블록명	면적(㎡)	용도지역	건축물 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
의복1	47,328	준주거지역	M	60% 이하	500% 이하

주1)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

주2) 의료시설 중 병원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상 확보하여야 함

< 의료복합시설용지(의복1) 용도계획 >

구 분	내 용
도면표시	• M
허용용도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-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 제외)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) - 교육연구시설 -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- 판매시설 - 업무시설 •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의한 특별법 제2조 6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 •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
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외의 용도